

부산지방법원 2023. 2. 23 선고 2022가단339358 판결 [전세보증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수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3. 1. 12.

판 결 선 고 2023. 2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6만 원과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22. 9. 22.부터 2022. 11. 2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B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- 피고 C, D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이우철

별지